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41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황 희·부승찬·박용갑

추미애 · 정성호 · 김병주

허 영·한민수·김준형

박균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·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.

그런데 군인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부사관의 경우 초임 간부로서 급여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9조의2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0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2제1항 중 "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"을 "대체복무요원,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, 장교나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9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	제79조의2(적금의 정부지원) ①		
국가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			
회복무요원, <u>대체복무요원 및</u>	<u>대체복무요원, 제</u>		
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	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		
<u>는 사람</u> 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	사람, 장교나 부사관에 최초로		
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	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		
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	<u>아니한 사람</u>		
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			
있다.	.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